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회의 일시 : 2016년 6월 09일(월) 11:05 ~ 12:06

◇ 회의 장소 :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 회의실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 회의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11:05 ~ 12:06

◇ 회의 장소 :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 회의실

◇ 회의 사항

1. 소집 일 : 2016년 6월 1일

2. 소집장소 :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 회의실

3. 참석자 : 이사 총수 7인중 7인 : 박우순, 김영일, 노만의, 박순모, 안병표
최용석, 최효순

감사 2인 : 김용철, 원준호

4. 부의사항

가. 보고사항

- 1) 원주시의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 점검 통보(2016.6.8.~7.1) 보고
- 2) 이사 임기종료일 도래(2016.8.2. 김영일이사, 2016.8.29. 박순모이사) 보고
- 3) 김정도 자신보육원장 수습1년(2015.7.17.~2016.7.16.) 기간 도래 보고
- 4)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명 충원 확정(2016.7.1.일부터) 보고

나. 심의사항

제1호의안 소망어린이집 폐지(건) 경과조치 이행을 조건부로 승인 가결함.

경과조치 ① 시설 폐지 의결전 발생된 시설장의 법적, 행정적 책임 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함.

② 소망어린이집 특별감사를 시행(2016.6.16.~22.)함.

당 법인 감사 2인(김용철 법무사, 원준호 노무법인 임원),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2인(김원배 -1*****,
최병진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

③ 감사 거부 또는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규정에 의하
여 법적 조치함.

④ 자산(물품)은 법인 감사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
품관리대장 감사 후 물품관리자가 제출한 합법적 재산목록 서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항)를 이사장의 승인 절차
후 결손금을 우선 변제할 것을 전제로 처분토록 함을 승인함.

기타 2호의안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2015.6.17.~2016.7.16.) 종료 승인함.

3호의안 이사회 소집 문서를 SNS 전송으로 등기발송 생략 가결함.

기타협의 임원(이사) 임기종료일 도래, 차기이사회 개최 전까지 추천절차 진행함.

◇ 의장 박우순(이사장)
◇ 사회·기록 안병표(이사)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성원보고(11:05)

(의장 이사장 박우순)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사회자 이사 안병표) 이사 7인중 7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의장 이사장 박우순)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이사장 인사

(의장 이사장 박우순) 이사 및 감사분들의 회의 참석과 법인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금일 의안으로 '소망어린이집 폐지(건)'이 상정되고 원주시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이사 및 감사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다.

4. 전차회의록 처리

(의장 이사장 박우순) 2016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를 주문하다.

(이사 최용석) 전차회의록은 사전에 승인하여 도장을 날인했고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었는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이사 박순모) 재청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동의, 재청이 있는데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모두 좋습니다. 소리들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5. 부의사항

가. 보고사항

- 1) 원주시의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 점검 통보(2016.6.8.~7.1) 보고
- 2) 이사 임기종료일 도래(2016.8.2. 김영일 이사, 2016.8.29. 박순모 이사) 보고
- 3) 김정도 자신보육원장 수습1년(2015.7.17.~2016.7.16.) 기간 도래 보고
- 4)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명 충원 확정(2016.7.1.일부터) 보고

나. 심의사항

- 제1호 의안 당 법인 목적사업(정관제2조3호) '소망어린이집 폐지(건)'
기타 2호의안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2015.6.17.~2016.7.16.) 종료 승인(건)
3호의안 이사회 소집 문서, SNS 전송으로 등기발송을 생략(건)

보고사항

(사회자 이사 안병표) 원주시로부터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 점검일 통보문서 접수, 이사 임기종료일 도래, 자신보육원장 수습1년 기간 도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명 충원 확정되었음을 자료와 함께 보고하다.

심의사항

제1호 의안 목적사업(정관제2조3호) '소망어린이집 폐지(건)'

(의장 이사장 박우순)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주요 경과 설명을 요청하다.

(사회 이사 안병표) 1992.3.12. 복지관 시설 1층 어린이집 인가 이후 2016.4.28. 소망어린이집 운영중단 의결 등 주요경과와 2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경과조치 진행 상황을 회의자료로 설명하고 최근 원주시로부터 2016.6.2. '소망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통지서 문서가 접수되어 동년 6월7일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소망어린이집 폐지(건)에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감사 김용철) 원주시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이 법인과 소망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시행 예정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 조항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제5장(감사) 규정, 자산(물품)처분과 관련하

여 ‘재무·회계규칙’ 4장(물품), 동 규칙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동 규칙 39조(물품의 관리의무), 동 규칙 40조(물품의 관리의무) 규정, 동 규칙 40조의2(재물조사), 동규칙 41조(불용품의 처리) 조항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됨을 진술한다.

(감사 원준호) 제2차 임시이사회(2016.4.28.)에서 ‘소망어린이집 운영중단’ 의결 후 해당 시설장의 ‘경과조치 이행’을 의결한 이 후 원주시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이 진행예정이므로 법인과 시설장 모두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당 시설장은 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 제24조(장부의 종류) 규정에 명시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되며, 동 규정 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규정에 의거하여 산하 시설 근무자 중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됨과 물품의 경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이사장의 승인 절차 후 결손금을 우선 변제함을 전제로 처분토록 함이 옳다는 의견을 진술하다.

(이사 최효순) 두 감사분의 진술 의견처럼 당 시설장과 법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함으로서 당 법인 설립자의 고귀한 사회복지 실천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

(이사 박순모)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된 물품관리자와 출납원을 복지관 근무 경력이 많은 직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이사 안병표) 김원배(1*****)부장과 최병진(1*****)팀장이 현재 근무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다.

(이사 최용석) 박순모 이사 의견에 재청하며 위 두 분을 물품관리자와 출납원으로 하여 감사의 업무를 보조케 하자는 의견을 재동의 하다.

(이사 노만의) 재청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동의·재청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찬성합니다 소리를)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물품관리자와 출납원으로 위 두 사람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하고 간사에게 그 소관 업무를 잘 전달하여 감사의 업무를 잘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어 소망어린이집 폐지(건)과 관련된 다른의견을 재요청하다.

(이사 노만의) 감사분의 의견 진술 내용과 시설폐지 관련법규 그리고 2차 임시이사회의 경과조치 이행을 조건부로 소망어린이집 폐지(건)을 승인 가결하자는 의견을 동의하다.

(사회 이사 안병표) 회의 자료에 명시된 2차 임시이사회의 경과조치 이행 상황을 설명하다.

(이사 박순모) 노만의 이사 의견에 재청한다는 의견과 경과조치 사항으로 ①시설 폐지 의결전 발생된 시설장의 법적, 행정적 책임 조치 의무사항을 이행 ② 소망어린

이집 특별감사 시행(2016.6.16.~22.)을 범인 감사 2인(김용철 법무사, 원준호 노무법인 임원)과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2인(김원배 620827-1******, 최병진 801224-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으로 하며, ③ 감사 거부 또는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규정에 의하여 법적 조치 ④ 자산(물품)은 범인 감사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감사 후 물품관리자가 제출한 합법적 재산목록 서류(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항)를 이사장의 승인 절차 후 결손금을 우선 변제할 것을 전 제로 처분토록 한다는 내용 등을 이행함을 조건부로 하여 소망어린이집 폐지(건)을 승인 가결하자는 의견을 재동의 하다.

(이사 김영일) 두 이사분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재차 묻고(찬성합니다 소리들림)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1호 의안 '소망어린이집 폐지(건)'는 '2016년6월9일부로 경과조치 이행을 조건부로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간사(이사)의 행정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다.

기타의안

2호 의안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 종료 승인(건)

(의장 이사장 박우순) 이사분 전원 참석하여 기타 의안을 상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회의자료에 기록된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 종료 승인(건)을 상정하다.

(사회 이사 안병표)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은(2015.6.17.~2016.7.16.)일임을 보충설명하다.

(이사 최효순)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현 자신보육원장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시설장으로서의 수습 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했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동의하다.

(이사 박순모) 재청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재차 묻고(찬성합니다 소리들림)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2호 의안 자신보육원장 수습기간은 7월16일부로 종료됨을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과 임기는 2015.6.23.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습기간 포함 3년임을 선포하다.

3호 의안 이사회 소집 문서, SNS 전송으로 등기발송 생략(건)



(의장 이사장 박우순) 이사회 소집문서를 SNS전송으로 등기발송함을 생략한다는 안건을 상정하다.

(사회 이사 안병표) 통신 기술의 발달로 SNS 전송 및 수신 확인이 가능하므로 등기발송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동의하다.

(이사 최용석) 재청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재차 묻고(찬성합니다 소리들림)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3호 의안 이사회 소집문서는 SNS전송으로 등기발송함을 생략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기타 논의

이사(임원) 임기종료일 도래, 차기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추천절차 진행

(의장 이사장 박우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회 임원(이사) 임기종료일 도래와 관련하여 임원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묻다.

(이사 박순모)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다.

(이사 최효순)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다.

(의장 이사장 박우순) 두 이사분의 의견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만큼 차기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임원(이사)의 추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다.

6. 폐회 선언

(의장 이사장 박우순) 다른 의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2016년 제3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종료 12시 06분)

강원도 원주시 육판길 1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참석 이사 7인, 감사 2인(가나다순) 날인

이 사 장 박 우 순



이 사 김 영 일



이 사 노 만 의



이 사 박 순 모



이 사 안 병 표



이 사 최 용 석



이 사 최 효 순 (인)

감 사 김 용 철 (인)



감 사 원 준 호

